

[붙임 1]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(1회)

1. 일반현황								
발주기관	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공사명	하남선(5호선연장) 궤도공사(1공구)					
계약방법	장기계속공사	계약자	천운궤도 주식회사	낙찰률				
계약현황	총 공사 계약 현황 (부기 금액)			진행 중인 공사 계약 현황(1차공사)				
	계약일	2017년08월29일	계약금액	5,799,448,000 원	계약일	2017년12월18일	계약금액	267,400,000 원
	착공일	2017년09월01일	준공예정일	2018년12월31일	착공일	2017년09월01일	준공예정일	2017년 12월 31일
물가변동 조정현황	조 정 횟 수	1회	2회	3회	4회	5회		
	조 정 방 법	지수조정						
	조 정 기 준 일	2018년01월01일						
	조 정 율	4.49 %						
	조 정 금 액	193,218,000 원						
2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								
물가변동 조정율 [A]	4.49 %	물가변동 경과기간	124 일	입찰일(기준시점) : 2017년 08월 18일				
				계약체결일(기준시점) : 2017년 08월 29일				
				조정기준일(비교시점) : 2018년 01월 01일				
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[B]		5,799,448,000 원		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공정율	예정공정율	25.02 %		
					실행공정율	5.47 %		
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[C]		1,496,135,000 원		물가변동 적용대가 [D] (D = B - C)	4,303,313,000 원			
선금급 공제금액 [F]				물가변동 등락금액 [E] (E = D × A)	193,218,000 원			
기타 공제금액 [G]				물가변동 조정금액 [H] (E - F - G)	193,218,000 원			
3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첨부서류								
번호	첨부 서류명				부수	비고		
1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					붙임 2 참조		
2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산출근거					붙임 3~11 참조		
3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참고자료					붙임 12 참조		
4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								
<p>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첨부자료의 내용은 계약체결일(또는 직전조정일) 및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와 계약예규 "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"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검토한 바 3% 이상 상승하였으며, 물가변동 경과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, 귀 기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8. 07.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(직인)</p>								

- 주 1. 물가변동 조정 대상공사가 2건 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고 합계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.
 주 2. 물가변동 대상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